



◆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고시」

부과기준 상향 및 가중감경요소 등 조정해 법집행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 대비 1% → 2%로, 부과 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도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과징금 20%의 감경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만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판단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합리화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조사방해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40%로 확대했다.

즉,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역은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 20% 이내 수준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끝)